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4. 9 선고 2023나32730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4. 9 선고 2023나32730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0. 19 선고 2023가단30979 판결

##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정영수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김종호

변론종결 2024. 3. 19.

판결선고 2024. 4. 9.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0. 19. 선고 2023가단30979 판결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 사이의 2019. 4. 5.자 11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장에서 항소취지에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제1심판결의 전부 취소를 구하고 있고,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보아도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택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에서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만일 원고의 항소취지를 항소장 기재내용대로 본다면,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사해행위 취소청구 패소 부분에 항소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그 취소를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준, 판사 최경은, 판사 임세영